연구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모음집

①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자율성

- 연구 수행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됨

구분		세부 항목	승인/통보	관련 법령
연구개발비	연구개발비 총액	① 연구개발비 총액변경	승인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
		② 연구개발기관 부담금변경(현금/현물간 변경 포함)	승인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
	인건비	①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변경	승인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
	연구활동비	①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·관리계획 변경	승인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
		②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 증액	승인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
	위탁연구개발비	① 위탁연구개발비 20%이상 증액	승인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
	국제공동연구비	① 계획대비 변경	승인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
	연구시설·장비비	① 연구시설·장비비 변경	승인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
		② 보유현황 변경	통보	(현물과 연계)
		③ 설치·운영 장소 변경(연구시설·장비 구축 목적 과제)	승인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
		④ 연구시설·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 금액 변경	승인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
	연구수당	① 연구수당 감액	통보	영 제14조 제2항 제3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2항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3항
		② 연구수당 증액 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(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)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 금액보다 증액 불가	승인	
	연구혁신비	① 연구혁신비 증액 ※ 연구혁신비 총액(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) 증액	승인	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
	간접비	① 간접비 감액	통보	영 제14조 제2항 제3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
		② 간접비 증액	승인	
	연구개발비 변경	**①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※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비 항목별 세부내역의 변경은 통보 없이 자율 변경 (단, 승인사항은 제외)**	통보	영 제14조 제2항 제3호
	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변경	①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예산의 변경	승인	(평가 시 활용)
	연구개발비 계좌	①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변경	통보	영 제14조 제2항 제4호
	연구개발비 지급 시기	①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의 변경 ※ 상호협의 후 '부처·전문기관 → 연구개발기관' 통보 방식으로 협약 변경	통보	영 제14조 제2항 제5호
	기관부담금 (현금)	① 기관부담금 중 현금 납부시기의 변경 ※ 부처·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상호 협의 후 변경	통보	영 제14조 제2항 제5호
	납부 기한			
	이자사용	① 정부지원비 이자의 사용 ※ 국고납입 하지 않고, 연구비 산입 또는 R&D재투자 등 사용 시	승인	영 제20조 제3항
연구기간	연구개발기간 변경	① 전체/단계 연구개발기간 변경	상호협의(승인)	법 제11조 제2항
기타	기타	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 시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3항,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	통보	영 제14조 제2항 제5호 영 제14조 제2항 제6호

※ 표 출처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('26.7.) p.73~74

②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(영수증) 구비 여부

- 연구비 카드 사용 후 연구비관리시스템(Ezbaro)연계 증빙(연구비 카드 매출전표/전자세금계산서 등)이 있는 경우 영수증 실물 증빙 등은 불필요

③ 주요 비목별 계상 및 집행 상한(한도) 기준

○ **(연구수당)** 수정인건비(인건비, 학생인건비, 미지급 인건비) × 20%

○ **(외부전문기술활용비)** 직접비 × 40%

※ 중앙행정기관의 장(전문기관)의 승인 시 40% 초과 계상 가능

○ **(위탁연구개발비)** 직접비(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연구개발부담비 제외) × 40%

※ 중앙행정기관의 장(전문기관)의 승인 시 40% 초과 계상 가능

※ 원래 계획의 20% 이상 증액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(전문기관)의 사전 승인 필요

④ 비목 자산별 물품 도입 및 계약 마감 기한

○ **(연구시설·장비 도입기한)** 과제 (단계)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·설치 또는 임차(검수) 완료

※ 단, 재난, 재해, 경제적·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(전문기관)의 승인을 통해 (단계)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도입 가능

※ 연구시설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(전문기관)의 승인을 통해 (단계) 종료일까지 도입 가능

○ **(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기한)** 과제 (단계)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완료

※ 단, 재난, 재해, 경제적·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(전문기관)의 승인을 통해 (단계)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도입 가능

○ **(연구재료 구매(검수) 기한)** 과제 (단계) 종료일까지 구매(검수완료)

⑤ 주관-공동(위탁)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간 집행 기준

○ **(회의비(식비) 사용기준)** 주관연구개발기관(A기관)와 공동(위탁)연구개발기관(B기관) 참여연구자 간 회의비(식비) 사용 가능

○ **(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사용기준)** 주관연구개발기관(A기관)와 공동(위탁)연구개발기관(B기관) 참여연구자 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지급 불가